

## 공시송달 공고

- 제 목: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- 공고기간: 2026. 7. 1. ~ 2026. 7. 16.(15일간)
- 공고대상

| 부과대상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위반내용<br>(근거법령)                   | 부과금액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반송<br>사유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성명   | 주소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과태료     | 가산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박*영  | 경기도 양주시<br>오정동로*** (옥정동) | 생활폐기물<br>무단투기<br>(폐기물관리법<br>제8조) | 50,000원 | 1,500원<br>(최초체납시 3%의<br>가산금, 매월 1.2%<br>증가산금 가산) | 폐문부재     |

#### 4. 공고내용

- 가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8조 및 제15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(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), 「지방세징수법」 제32조(독촉과 최고)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- 나. 위 공고기간 내에 용현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- 다.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시면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에 따라 최초 체납 시 부과된 과태료의 3% 가산금 외에,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.2%의 증가산금(최고 60개월까지)이 부과되며, 「지방세징수법」 제33조(압류)에 따른 재산의 압류조치 등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있으며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,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,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(監置)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라. 기타 문의사항: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2동 행정복지센터
- 주소: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마루로 56(용현동)
  - 담당공무원: 용현2동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자원순환담당자 박기호
  - 전화번호: 032-728-6183, 팩스번호: 032-728-6649

2026년 7월 1일

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2동장

